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개선방안

202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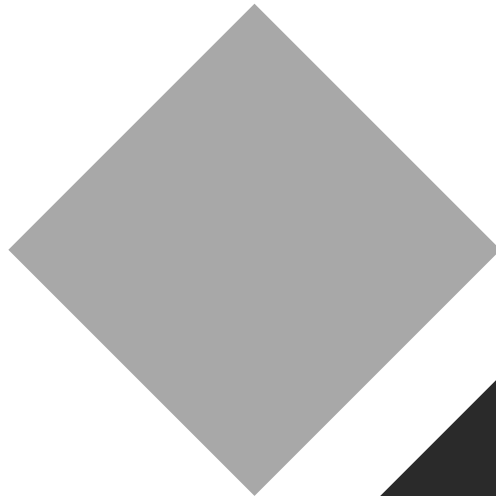
정재호 · 이재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개선방안

2022. 10.

정재호 · 이재선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3급

# 목 차

I. 서론 .....	1
II. 원산지규정의 개요 .....	5
1. 원산지규정의 개념 .....	5
가. 원산지규정의 의의 .....	5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 .....	7
다. 원산지규정의 기능 .....	9
2.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 .....	10
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	10
나. 우리나라의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 .....	14
III. 국제협정 및 주요국의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	29
1. 국제협정상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	29
가. 개정 교토협약 .....	29
나.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30
2. 주요국의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	32
가. 미국 .....	32
나. EU .....	38
다. 일본 .....	43

IV.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운용상 쟁점사항 .....	47
1. 원산지규정의 구조 .....	47
가. 규정의 방식 .....	47
나. 규정의 우선순위 .....	51
2.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	53
가. 적용대상의 범위 .....	53
나.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 .....	59
3.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 .....	67
V. 시사점 및 개선방안 .....	76
1.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립 .....	76
가. 적용법령의 우선순위 설정 .....	76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공고 .....	78
2. 국내생산물품등의 범위 조정 .....	80
가.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	80
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의 원산지판정 절차 마련 .....	83
다. 수출입 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구분 명확화 .....	87
3. 원산지증명 규정의 정비 .....	89
가. 원산지확인서 발급규정 신설 .....	89
나. 원산지증명서류 허위발급 금지규정의 대상 추가 .....	91
VI. 결론 .....	93
참고문헌 .....	95

##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개요 .....	17
〈표 III-1〉 일본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판정기준 .....	44

## 그림 목차

[그림 II-1] 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 및 적용조치 .....	7
[그림 II-2] 국내생산물품의 구분 .....	13
[그림 II-3] 국내생산 후 수출되는 물품 .....	14
[그림 III-1] EU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	40
[그림 III-2] EU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잔여규정 예시 .....	42
[그림 IV-1] 국내생산물품등과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 .....	54
[그림 IV-2] 국내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의 구분 .....	69
[그림 IV-3] 국내생산물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 적용 예시 .....	72
[그림 V-1] 국내생산물품등과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의 구분 개선 .....	86

# I. 서론

-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 흐름은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효율 증가를 위한 국제적인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가치사슬 무역이 이끌어 왔음
  -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수직적 국제 분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그러나 글로벌 공급·가치사슬 무역은 FTA 확대, 보호주의의 확산,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탈세계화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 FTA 확대로 관세의 부담이 없어지고,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타고 생산 활동의 본국회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탈세계화에 따른 국제무역구조의 재편에 따라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원산지제도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 원산지규정에 따라 국내산 물품에 대한 구분을 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규정은 국내의 제조·가공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규정을 통해 원산지를 판정·표시·증명함으로써 국내산 물품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최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6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이루어짐<sup>1)</sup>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오인 표시하거나 거짓 또는 오인 표시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짐
- 그뿐만 아니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국내생산물품은 생산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표시하면서 원산지판정의 오류나 원산지표시의 고의위반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무역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모두 개선된 것은 아님
  - 특히 개정된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적용범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 등과 같은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먼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규정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과 관련된 개별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원산지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1)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 또한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원산지표시·증명을 할 수 있는 물품 또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음
  - 원산지판정기준이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금지규정도 적용범위가 한정됨
  - 원산지증명의 경우 또한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져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더라도 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그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별로 구분적용 되어야 하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산지규정의 목적이나 기능이 물품의 거래형태별로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국내생산물품을 수입물품이나 수출물품으로 오인하기도 함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을 수입물품의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음
  
-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쟁점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의 정확하고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기능, 목적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제Ⅲ장은 국제협정과 주요국의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제Ⅳ장에서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제V장에서는 제IV장에서 살펴본 쟁점사항을 개선하여 기능과 목적에 맞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II. 원산지규정의 개요

### 1. 원산지규정의 개념

#### 가. 원산지규정의 의의

- 물품의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성장·채취한 지역 또는 국가를 말하며, 물품의 국적이라 할 수 있음
  -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장소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므로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제공국·상표소유국과는 구별됨<sup>2)</sup>
  - 또한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단순히 통과하거나 보관·환적된 경유국이나 적출국과 무관한 개념임<sup>3)</sup>
  
- 물품이 하나의 국가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되지만,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과정을 나누어서 수행한다면 원산지를 결정할 기준이 필요함
  - 1990년 이후 글로벌 생산 공급망을 바탕으로 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하나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는 협정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이 생산된 것으로 보는 국가임<sup>4)</sup>

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 II』, 2010, p. 281.

3) 채형복,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2011, p. 11.

4)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050>, 검색일자: 2022. 7. 4.

- 물품의 원산지국은 관세, 수량제한 또는 기타 무역 관련 조치의 적용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의미함<sup>5)</sup>
- 이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각종 무역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을 원산지규정이라 함
  -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국내법령 또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에 의하여 개발된 것을 의미함<sup>6)</sup>
-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판정, 결정된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증명,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로 구성됨
  - 원산지판정은 원산지를 어떤 국가로 판단할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포함함
  - 원산지증명은 원산지에 따른 관세 또는 무역조치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말함
  - 원산지표시는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물품에 표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임
- 원산지증명과 표시는 판정기준과 함께 규정되어야 하지만 원산지판정기준은 그 자체로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라 지칭되기도 함
  - 원산지증명과 표시는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으로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진 후 적용할 수 있음
  - 반면 원산지판정은 증명이나 표시 없이 특혜세율 적용이나 무역조치의 시행에 사용될 수 있음<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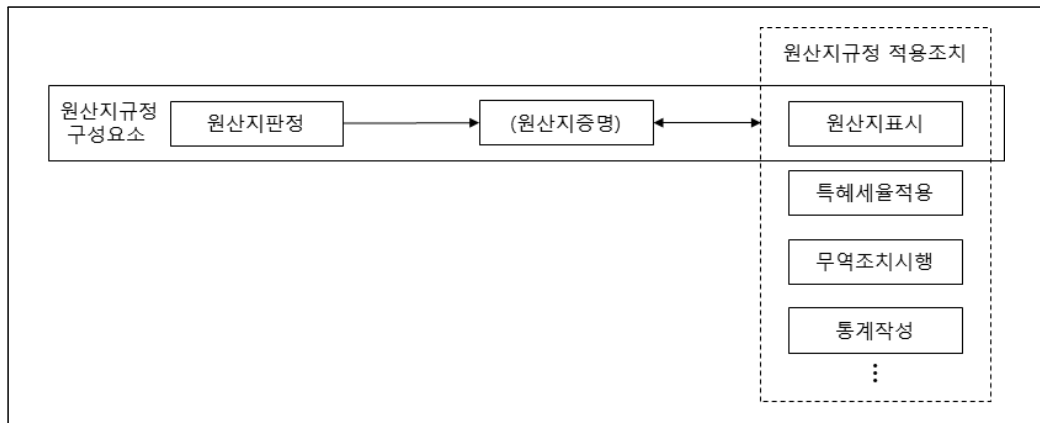
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E1./F2.

6)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E2./F3.

7)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WTO 협정세율, 덤핑방지 관세 등은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요구됨

- 또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임과 동시에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조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원산지규정은 특혜세율 적용이나 물품의 수출입 제한 등을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나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조치 중 하나임

[그림 II-1] 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 및 적용조치



자료: 저자 작성

###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

- 원산지규정은 원산지에 따라 적용하는 관세 또는 무역조치의 성격에 따라서 특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됨
  - 원산지결정이 관세·비관세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일반적인 식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므로 원산지결정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도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함<sup>8)</sup>
  - 즉 특혜 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를 초과하는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계약적 또는 자

8) 채형복(2011), p. 23.

발적인 무역제도에 따른 원산지결정을 위한 판정임<sup>9)</sup>

- 계약적 관세특혜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통해 특정국가 상호간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임
- 자발적 관세특혜는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임

□ 반면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무역조치 시행에 있어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임<sup>10)</sup>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특혜 원산지규정 외에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말함<sup>11)</sup>
  - 최혜국대우,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의 원산지규정을 포함함<sup>12)</sup>
  - 또한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와 같이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규정을 포함함<sup>13)</sup>

□ 특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그 목적, 적용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협정, 법령 및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으로 관세 등의 혜택을 위한 특정국가 간의 협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WTO 차원의 공동 규정은 없음<sup>14)</sup>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며, 해당 협정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로 통일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국내법령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9)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1조

10)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3090>, 검색일자: 2022. 7. 5.

11)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1조

12)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2조

13)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2조

14)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무역제도와는 관련되지 아니한다.(「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1조)

- 특히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준이나 원산지확인 절차 등이 협정별로 상이함
  - 대표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인 FTA 협정은 원산지결정의 일반원칙과 품목별기준을 포함하는데, 이는 FTA 협정 상대국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짐
  
- 반면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인 원산지식별을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 국가에 따라 그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지지 않음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대상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sup>15)</sup>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혜 원산지규정처럼 국가별로 기준이나 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없음

#### 다. 원산지규정의 기능

- 원산지규정은 무역거래에 영향을 주어 원산지에 따라 물품에 대한 대우나 의무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특혜 원산지규정은 관세편의 제공 등 무역정책의 요소로 기능하며,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무역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함<sup>16)</sup>
  
- 먼저 원산지규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원재료의 조달,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침
  -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원산지는 물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원산지에 따라 물품이 차별화됨
  - 원산지는 무형의 권리와 유사하게 품질과 신용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산자가 경쟁력을 갖도록 함<sup>17)</sup>
  - 또한 소비자가 저가, 저품질 또는 저기술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

15) 원산지규정 자체에는 대상국가가 특정되지 않지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무역조치 등은 그 대상을 특정국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16) 최홍석·이영달, 『FTA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 7., p. 9.

17) 최홍석·이영달(2011), pp. 9~10.

### 도록 물품의 정보를 제공함

- 또한 원산지규정은 국민의 보건이나 안전, 자연환경 보전, 국내자원보호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sup>18)</sup>
  -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이나 국산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안전, 자연 및 자원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그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에 원산지규정이 활용되거나 그 자체로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함<sup>19)</sup>
  - 예를 들어 원산지규정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조치나 FTA 등의 호혜조치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 또한 원산지표시·증명과 같은 원산지규정은 수출입 당사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부담시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함

## 2.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

### 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확인·표시를 위해서도 필요함
  - 원산지 규정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구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및 안전을 지키는 등의 기능을 함
- 특히 국내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수입물품인 경우 생산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참

18) 최홍석·이영달(2011), p. 10.

19) 최홍석·이영달(2011), pp. 10~11.

여하므로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확인·표시해야 함

- 다만 물품의 생산과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므로 원산지결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원산지규정 목적이나 기능이 수출입물품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부분 수출입물품과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됨
  - 국내생산물품은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관세상의 혜택·불이익을 위한 원산지규정은 필요하지 않고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규정이 필요함
  - 또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인 원산지규정의 기능 외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거나 국산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외국산으로 배격당해 외국인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sup>20)</sup>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국내산 판정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음<sup>21)</sup>
  
- 이와 같이 국내생산물품과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다르므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함
  - 수출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국내생산물품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먼저 [그림 II-2] ①의 경우와 같이 수입원료를 단순히 가공하는 경우와 ② 및 ③과 같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생산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①과 ②의 경우처럼 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와 ③의 경우와 같이 수출하는 경우가 있음

20) 산업자원부, 「국산물품 원산지표시("Made in Korea")제도 도입 검토」, 보도자료, 1998. 5. 2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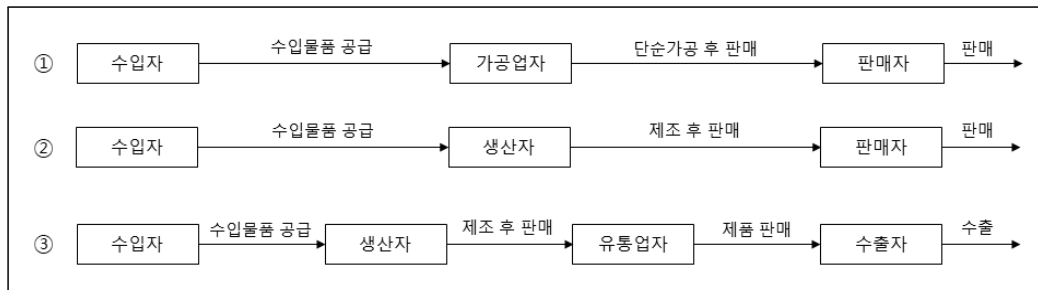
- 수입원료를 단순가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했다고 볼 수 없고, 수입물품으로 보아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야 함
  - 단순 가공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특혜세율 적용, 생산자·소비자보호 등과 같은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FTA 협정 등 특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 모두 단순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sup>22)</sup>
  -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단순 가공공정은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내에서 판매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됨
  
- 한편 국내에서 가공이나 생산과정을 거친 후 국내에서 최종 판매되지 않고 수출되는

- 
- 22) 협정, 법령, 규정 등에서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하지 못하는 단순가공을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와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네.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됨

- 원산지규정은 물품이 소비·사용되는 국가에서 생산자·소비자 보호, 국민안전 등의 기능을 하고 수출되는 국가의 관세 혜택이나 차별을 받도록 함
- 따라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수출국의 원산지 규정을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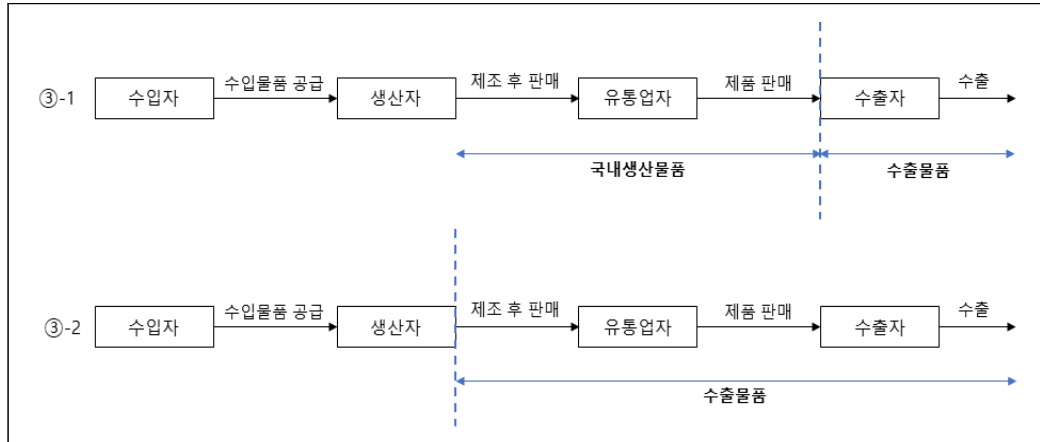
[그림 II-2] 국내생산물품의 구분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단순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제조되어 국내에서 최종 판매되는 물품을 말함
  - 즉 국내에서 판매되어 소비·사용되는 물품은 단순공정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달라짐
- 다만 ③의 경우와 같이 국내생산 후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수출되는 경우 유통단계의 물품을 국내생산물품으로 볼지 수출물품으로 볼지 살펴보아야 함
  - [그림 II-3] ③-1과 같이 제조 후 유통되는 단계까지는 국내생산물품으로 보아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수출되는 때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또는 물품이 최종 수출되므로 ③-2처럼 수출을 위한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되는 판매의 경우에도 수출물품으로 보아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음

[그림 II-3] 국내생산 후 수출되는 물품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음<sup>23)</sup>
- 따라서 ③-1처럼 생산자가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수출자가 수출하는 단계에서 수출물품 규정을 적용해야 함

## 나. 우리나라의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

### 1) 원산지규정 개요

-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목적에 따라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되어 법령, 조약, 협정,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각 원산지규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절차 등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목적에 맞게 원산지를 엄격하거나 용이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음

23) 「대외무역법」 제35조

- 우리나라는 원산지규정을 「관세법」, 「대외무역법」, 조약, 협정,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서 정하고 있으나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이 혼재되어 있음<sup>24)</sup>
  - 「관세법」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  
당 규정이 특혜세율, 무역조치 등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음
  - 「대외무역법」도 수출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산  
지판정과 증명에 대한 규정은 특혜·비특혜 조치 등에 모두 적용됨
  
- 「관세법」은 협정·조약 또는 동법에 따른 관세양허라는 특혜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기  
본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하위 규칙에서 정함
  - 제73조 내지 제80조에서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양허에 대한 조  
치를 규정하여 관세상 특혜를 부여함
  - 이러한 관세상 특혜가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  
229조에서 원산지확인기준을 명시함
    - 원산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은 「관세법 시행규  
칙」에서 정함<sup>25)</sup>
    - 다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확인기준  
은 별도로 고시함<sup>26)</sup>
  - 또한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양허를 위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항은 제  
232조 내지 제232조의2에서 정함
    - 수입물품의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함
  
- 한편 「관세법」은 비관세장벽인 무역조치를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원산지확인기준을 제229조에서 명시함

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규칙은 특혜 원산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25)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76조

26)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비특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 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제51조 내지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sup>27)</sup>
  - 이러한 비관세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를 판정하기 위한 원산지확인기준은 제229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명시함
- 이와 같이 「관세법」에서는 양허관세 적용과 관세율의 조정을 위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229조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수입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의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임
  - 따라서 제229조는 특혜관세의 부과·징수와 비관세조치 적용물품의 통관을 위해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원산지증명에 관한 제232조 내지 제232조의2는 '관세의 편익', '관세의 양허'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특혜 원산지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조항의 위임규정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특혜관세의 적용,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고 명시하여 특혜 원산지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수출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비특혜 조치를 위한 원산지의 표시·판정·증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33조에서 원산지표시, 제34조 내지 제35조에서 원산지판정, 제36조 내지 제37조에서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표시대상·방법,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확인·발급기준 및 절차 등은 「대외무역법 시행령」<sup>28)</sup>과 「대외무역관리규정」<sup>29)</sup>에서 규정함

27) 우리나라 「관세법」은 비관세조치상 수입규제에 해당하는 무역조치를 관세율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2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67조

2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내지 제93조

- 그러나 「대외무역법」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 제34조 내지 제35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여 해당 규정이 특혜 원산지규정인지 비특혜 원산지규정인지 알 수 없음
    - 하위 규정에서도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생산물품은 관세 양허와 같은 특혜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 또한 「관세법」의 경우처럼 하나의 조항이 특혜·비특혜 조치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제37조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규정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원산지식별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임
  - 이와 다르게 제36조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의 제출은 수입제한, 원산지표시 등<sup>30)</sup> 비특혜 조치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확인을 위해 필요함

〈표 II-1〉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개요

요소	대상	특혜 원산지규정	비특혜 원산지규정
판정	수출입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제229조, 「대외무역법」 제34조
	국내생산물품	-	「대외무역법」 제35조
증명	수입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제232조	「대외무역법」 제36조

3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2.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표 II-1〉의 계속

요소	대상	특혜 원산지규정	비특혜 원산지규정
증명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제232조의2	
		「대외무역법」 제37조	
	국내생산물품	-	「대외무역법」 제37조
표시	수출입, 국내생산 물품	-	「대외무역법」 제33조

자료: 저자 작성

## 2)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서 국내생산물품의 국산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기준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 및 증명 규정을 개정·신설했<sup>31)</sup>
  -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한 물품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단속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함
  - 또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sup>32)</sup>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해야 함<sup>33)</sup>

31)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32)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33) 「대외무역법」 제35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함<sup>34)</sup>
  - 「대외무역규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을 국내생산물품등이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한정함<sup>35)</sup>
    - 국내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
    - 제1류~제24류, 제30류, 제33류, 제48류, 제49류, 제50류~제58류, 제70류, 제72류, 제87류(제8701호~제8708호), 제89류
  
- 「대외무역법」상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첫째로 「대외무역규정」에서 고시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이어야 함
  -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sup>36)</sup> 2022년 현재 HS 4단위 기준 658품목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sup>37)</sup>
  
- 또한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보지 않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를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음<sup>38)</sup>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됨
    - 통풍

34)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35) 「대외무역규정」 제86조 제1항

3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4&pageFlag=&sitePage=1-2-1>, 검색일자: 2022. 7. 26.

37) 「대외무역규정」 별표 8

38) 「대외무역규정」 제85조 제8항

-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 냉동, 냉장
  -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거르기 또는 선별
  -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 시험 또는 측정
  -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별도로 정한 제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
  - 펴기, 압착
  - 상기의 활동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 마지막으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농수산물·식품, 의약품, 향료·화장품, 지류,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열거된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대외무역법」은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sup>39)</sup>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봄<sup>40)</sup>

39)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4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봄<sup>41)</sup>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을 준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sup>42)</sup>
-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음<sup>43)</sup>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국명”
    -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은 가공국과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sup>44)</sup>
-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 생산국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 원료나 부품이 1개국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
    -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4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3항

4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4항

4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4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5항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 국명(○%)”)

- 이와 같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단속·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2022년 6월 관련 규정이 개정됨<sup>45)</sup>
  -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sup>46)</sup>
  -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국내생산물품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됨
  - 이를 위반한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sup>47)</sup>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생산물품등과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sup>48)</sup>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함<sup>49)</sup>
    - 국내생산물품등의 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서류
    - 국내생산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5) 「대외무역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46) 「대외무역법」 제35조 제3항

47)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48)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49)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2

- 한편 이러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됨<sup>50)</sup>
  - 공공조달, 유통판매 등에서 우리나라 원산지를 납품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증빙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sup>51)</sup>
  - 따라서 국내생산물품등의 거래 책임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sup>52)</sup>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음
  
- 또한 「대외무역법」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함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위반행위 관련 다음의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음
    -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안 됨<sup>53)</sup>
  
-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음의 벌칙규정 또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함
  - 외국산 물품 등의 국산 물품 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sup>54)</sup>

---

50)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51) 정재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안 검토」, 2022년 상반기 관세연구 전문가 간담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7. 27.  
52) 「대외무역법」 제37조 제1항  
53) 「대외무역법」 제38조  
54)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 3)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물품 관련 원산지규정

- 「대외무역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함<sup>55)</sup>
  -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하지 않으므로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포함됨
  - 즉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물품은 다른 법령에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대외무역법」의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은 표시와 증명을 위한 규정이므로 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물품의 표시와 증명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야 함
  -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물품은 동법에 따른 표시와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농수산물·식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sup>56)</sup>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함<sup>57)</sup>
  -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5) 「대외무역법」 제37조 제1항

5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sup>58)</sup>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농수산물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함)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
  
- 즉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생산한 농수산물은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농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반면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입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함<sup>59)</sup>
  
- 이러한 원산지표시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표시기준에 원산지판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정함<sup>60)</sup>
  
-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생산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사항은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표시기준으로 정하고 있음<sup>61)</sup>
  - 다만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료(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가공품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지 않음
  
- 농산물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가 변경 또는 전환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sup>62)</sup>

5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5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6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6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6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제1호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함
  -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다음의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보아 사육국을 원산지로 함
    - 소의 경우 사육국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출생국을 함께 표시함)
    - 돼지와 양의 경우 사육국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출생국을 함께 표시함)
    -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출생국을 함께 표시함)
  -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봄
    - 이외의 버섯은 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봄
  - 다만 다음의 농산물은 경우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한 경우
    -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성장시킨 경우
- 수산물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가 변경 또는 전환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sup>63)</sup>
- 이식절차를 거쳐 수정란, 김 사상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생산된 수산물은 국내산으로 봄
  - 수산물을 이식절차를 거쳐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양식한 경우 원산지가 전환되었다고 봄
    -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식된 경우
  - 다만 이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어 또는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저장, 분포장, 보관, 단기 성육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음

6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제2호

- 한편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관련 표시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제조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의 제품안전관리 대상이며 대상품목별로 정해진 품질관련 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
  - 제품 표시사항은 제품안전제도별로 공고된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sup>64)</sup>에서 품목별로 정하고 있으며, 표시사항에는 제조국명이 포함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를 표시함<sup>65)</sup>
  -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므로<sup>66)</sup> 제조자는 제품을 생산·조립·가공하는 자를 뜻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원산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조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조국은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제조자에 따라 결정됨
  - 제조자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생산·조립·가공을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대외무역법」상 단순가공활동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음
  - 또한 제조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를 제조국으로 보는데, 이는 「대외무역법」상 실질적 변형<sup>67)</sup>과는 별개의 개념임
  
- 반면 어린이제품<sup>68)</sup>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련 사항으로 제조국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제조국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을 따름<sup>69)</sup>

6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6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제7.2조

6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67) 실질적 변형은 특정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4113>, 검색일자: 2022. 8. 3.)

68)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69)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5.4조

- 따라서 어린이제품을 수입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 그 밖에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화장품법」에서는 수입화장품의 포장에 제조국명을 표시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sup>70)</sup>
  - 「의료기기법」은 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수입의료기기의 제조국과 제조사명을 기재하도록 함<sup>71)</sup>

---

7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71) 「의료기기법」 제20조

### Ⅲ. 국제협정 및 주요국의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 1. 국제협정상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 가. 개정 교토협약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개정 교토협약)」은 특별부속서 K에서 원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별부속서 K는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서류, 원산지증명서류 확인으로 구성되어 원산지판정 및 증명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는 포함하지 않음
  
- 「개정 교토협약」은 원산지규정을 특정국가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으로<sup>72)</sup> 정의하면서 원산지판정 자체를 원산지규정으로 봄
  - 이에 따라 제1장 원산지규정에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순공정과 같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 교토협약」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은 수출 및 수입 원산지규정을 정하는 때에 따라야 하며, 국내생산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관세당국이 수출 및 수입 시에 적용할 책임을 지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규정은 특별부속서 K 제1장의 규정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함<sup>73)</sup>
  - 제2장과 제3장의 원산지증명서류 규정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수출자를 기재

7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특별부속서 K 제1장 E2./F3.

73)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특별부속서 K 제1장 제1항

하거나<sup>74)</sup> 원산지신고를 물품의 수출과 관련한 진술이라고 명시함<sup>75)</sup>

- 즉 「개정 교토협약」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개정 교토협약」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은 수출 및 수입 시 특혜관세, 경제 또는 무역조치, 보건이나 공공질서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임

#### 나.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을 채택함
  -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과 그 적용은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원산지규정 자체가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함<sup>76)</sup>
- 각 국가가 자국의 원산지규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무역장벽과 같이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쟁이 심해지자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됨<sup>77)</sup>
  - 수입국의 자의적인 원산지판정으로 수출국에서는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따라 WTO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을 제정하고 통일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 of origin) 협상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sup>78)</sup>
  - 동 협정은 통일 원산지규정 채택을 위한 작업계획과 규정 마련 전과 후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거나 이행하는 데 적용될 규율 원칙을 포함함

74)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특별부속서 K 제2장 부록 I

7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특별부속서 K 제2장 E3./F4.

76)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전문

77) 유선봉, 「원산지규정의 주요 이슈와 전망: 원산지 판정기준과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6. 4., p. 268.

78) 강준하, 「WTO 통일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p. 35.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며,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무역제도와는 관련되지 않음<sup>79)</sup>
  - 최혜국대우,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차별적인 수량제한, 관세할당, 정부조달,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함
  
- 이와 같은 비특혜 무역수단에 적용될 통일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작업계획을 명시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sup>80)</sup>
  - 협정에서는 작업계획 개시 후 3년 내에 완결된다고 명시했으나 협상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2007년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중단됨
  
- 한편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서는 통일 원산지규정이 마련되기 전 각국이 원산지 규정을 운용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원칙 또한 명시하고 있음<sup>81)</sup>
  -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일관적·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됨<sup>82)</sup>
  
- 이러한 원산지규정 규율원칙은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욱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sup>83)</sup>
  - 다시 말해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서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sup>84)</sup>

79)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

80) 정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정민철, 『원산지 누적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KIEP 연구보고서 17-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157.

81) 강준하(2011), pp. 42~45.

82)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83)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84) 채형복,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관세학회지』, 제6권 제2호, 2005, p. 76.

- 국내생산물품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엄격성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외에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원산지규정 원칙이나 작업계획에 따라 마련될 통일 원산지규정이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은 규정하지 않음

## 2. 주요국의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 가. 미국

- 미국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에 미국산(Made in U.S.A. 또는 Made in America)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과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미국산 표시를 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명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미국에서 일반적인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의무가 아니나 미국산 표시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물품은 미국산 표시를 해야 함
-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의 수록법에서<sup>85)</sup>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와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산 표시를 규정하고 있음

---

85) 15 U.S.C.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의 수록법

CHAPTER 2—FEDERAL TRADE COMMISSION; PROMOTION OF EXPORT TRADE AND PREVENTION OF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sections 41 to 77)

SUBCHAPTER I—FEDERAL TRADE COMMISSION (sections 41 to 58)

SUBCHAPTER II—PROMOTION OF EXPORT TRADE (sections 61 to 66)

SUBCHAPTER III—LABELING OF WOOL PRODUCTS (sections 68 to 68j)

SUBCHAPTER IV—LABELING OF FUR PRODUCTS (sections 69 to 69j)

SUBCHAPTER V—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sections 70 to 70k)

SUBCHAPTER VI—PREVENTION OF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sections 71 to 77)

- 또한 「미국 자동차 표시법(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sup>86)</sup>에서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연방무역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연방무역위원회가 미국산 표시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짐<sup>87)</sup>
  - 누구든 미국산 표시를 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소개, 운송, 매각, 광고, 제안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결정이나 명령을 준수해야 함<sup>88)</sup>
  - 상거래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습은 불법이며, 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방지할 권한이 있음<sup>89)</sup>
- 물품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 미국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연방무역위원회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는 수입 구성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sup>90)</sup>
  - 연방무역위원회는 광고 및 표시에서 미국산이라는 표시문구(claims)<sup>91)</sup>의 사용과 관련한 시행정책에 관한 성명<sup>92)</sup>과 지침<sup>93)</sup>을 발표함
- 연방무역위원회의 성명과 지침은 물품, 라벨, 광고 및 기타 판촉 자료에 나타나는 미국산이라는 표시(claims)에 적용됨<sup>94)</sup>
  - 인터넷이나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한 마케팅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형태의 마케팅에도 적용됨

86) 49 U.S.C. 제32304조를 「미국 자동차 표시법(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이라 칭하고 있음

87) Federal Trade Commission,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Federal Register*, 62(231), 1997. 11., p. 63767.

88) 15 U.S.C. 제45a조

89) 15 U.S.C. 제45조

90) 15 U.S.C. 제45a조

91) 물품, 라벨, 광고 및 판촉자료에 나타나는 미국산 표시(claims)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품에 직접 또는 라벨로 표시(marking)와 구분하기 위하여 해당 의미로 사용하는 표시(claims)에는 괄호에 영문을 표시함

92) Federal Trade Commission(1997)

93) Federal Trade Commission, "Complying with the Made in USA Standard," 1998. 11.

94)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2.

- 연방무역위원회의 성명과 지침에 따르면 물품이 미국에서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제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조건 없이 미국산이라는 표시(claims)가 가능함<sup>95)</sup>
  -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라는 것은 물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 및 가공이 미국산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해외 성분이 없거나 무시할 수준이어야 함
  
- 미국산 표시(claims)를 위한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라는 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을 통하여 확립된 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원산지판정기준임<sup>96)</sup>
  - 이와 같은 강력한 미국산 판정기준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물품에 대한 우호를 가지고 있다는 표명으로써 미국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음
  
- 물품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가 미국에서 제조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① 최종 조립 및 가공 장소, ② 미국 제조비용의 비율, ③ 해외 성분과의 이격성이 고려됨<sup>97)</sup>
  -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되어야 하며, 이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소 마무리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 물품이 미국에서 완성된 경우 총 제조비용에서 해외 부품 및 가공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야 함
    - 총 제조비용의 작은 부분만 해외 가공에 기인하지만 해당 가공이 물품 전체 가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조건 없는 미국산 표시(claims)는 부적절함
  - 또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해외 성분이 얼마나 많은 가공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가공단계가 길수록 해외 성분의 중요성이 낮아짐
  
- 물품이 미국산이라는 조건 없는 표시(claims)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미국산이라고 입증해야 함<sup>98)</sup>
  - 이를 위하여 생산자는 해외 성분의 평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해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과정을 추적해야 함<sup>99)</sup>

95)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4.

96) 채형복(2011), pp. 95~96.

97) Federal Trade Commission(1997), pp. 63768~63769.

98)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5.

- 초기 제조공정에 포함된 해외 성분은 완제품의 직접적인 부분을 이루는 성분이나 중간 공급자가 생산한 부품 또는 요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 물품이 미국에서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제조되지 않은 경우 국내 성분 또는 공정의 양이나 유형을 설명하는 조건부 미국산 표시(claims)를 할 수 있음<sup>100)</sup>
  - 물품에 미국 성분 또는 공정이 포함되지만 조건 없는 미국산 표시(claims)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부 미국산 표시(claims)를 적용할 수 있음
  
- 조건부 표시(claims)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기 위하여 충분히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형식, 형태여야 함<sup>101)</sup>
  - 예를 들어 특정되지 않은 해외 성분의 존재를 나타내거나(Made in USA of U.S. and imported parts) 포함된 미국 성분의 양을 명시할 수 있음(60% U.S. content)
  - 또는 수입된 부분품이나 재료를 명시하거나(Made in USA from imported leather), 부분품이 공급된 특정한 국가명을 기재할 수 있음(Made in USA from French components)
  
- 해외 성분에 대한 정보를 첨부한 미국산이라는 형태의 조건부 표시(claims)는 최종 조립, 공정 또는 완성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 가능함<sup>102)</sup>
  - 즉 물품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조건부 표시(claims)를 사용해야 함
  
- 또한 미국에서 조립되었다는 조건부 표시(claims)는 미국에서 주요하고 상당한 조립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만 가능함<sup>103)</sup>
  - 조립이라는 표현은 간단한 드라이버 작업부터 기본재료로 복잡한 완제품을 구성하

99)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8.

100)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9.

101) Federal Trade Commission(1997), p. 63769.

102) Federal Trade Commission(1997), p. 63770.

103) Federal Trade Commission(1997), p. 63770.

는 것까지 광범위한 공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반면 특정공정이 미국에서 수행되었거나 특정부품이 미국에서 제조되었다는 조건부 표시(claims)는 해외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도 사용할 수 있음<sup>104)</sup>
  - 다만 일반적인 제조, 생산, 제작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특정공정이나 특정 부품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함
  
- 조건부 표시(claims) 또한 조건 없는 표시(claims)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진실되고 입증 가능해야 함<sup>105)</sup>
  - 따라서 실재보다 많은 국내 성분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상당한 양의 미국 성분 또는 공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표시(claims)는 지양해야 함
  
- 한편 미국은 특정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무역법」의 수록 법에서는 국내생산한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함
  - 「양모제품 표시법(Wool Products Labeling Act)」 및 「섬유제품 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은 양모 및 섬유제품의 원산지표시를 규정함<sup>106)</sup>
  
- 「양모제품 표시법」은 스탬프, 태그, 라벨, 기타 식별수단에 가공 또는 제조된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잘못된 표시로 보아 이를 금지함<sup>107)</sup>
  - 잘못 표시된 양모제품의 상업적 도입, 이를 위한 제조, 상업용 판매, 운송, 유통은 불법이며,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불공정하고 기반적인 행위 또는 관행임<sup>108)</sup>
  
- 「섬유제품 식별법」은 미국에서 가공 또는 제조된 섬유제품에 이를 식별할 표시를 스

104)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9.

105)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p. 10.

106) 「모피제품 표시법(Fur Products Labeling Act)」에서도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피 제품에 사용된 모피가 수입된 경우에 한함(15 U.S.C. 제69b조)

107) 15 U.S.C. 제68b조

108) 15 U.S.C. 제68a조

- 탬프, 태그, 라벨, 기타 식별수단에서 하지 않은 경우 잘못된 표시로 봄<sup>109)</sup>
- 잘못 표시된 섬유제품의 상업적 도입, 이를 위한 제조, 상업용 판매, 운송, 유통은 불법이며,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불공정하고 기반적인 행위 또는 관행임<sup>110)</sup>
  
  - 이와 같이 잘못된 표시를 한 양모 또는 섬유제품을 제조, 운송, 판매, 판매를 위한 주문을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음
    - 양모 또는 섬유제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유죄판결 시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됨<sup>111)</sup>
  
  - 또한 「미국 자동차 표시법」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정보와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1994년 9월 30일 이후 제조되어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승용자동차의 제조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라벨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함
      - 미국 및 캐나다 성분이라고 식별된 미국 및 캐나다산의 자동차 부품의 백분율
      - 자동차가 최종 조립된 시, 주 및 국가
      - 자동차 부품의 최소 15%의 원산지가 미국 및 캐나다 외의 국가인 경우 부품의 가장 많은 가치에 대한 원산지인 2개 이상의 국가명, 각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 가치의 백분율
      - 엔진 및 트랜스미션의 원산지
    -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및 캐나다산의 가치는 다음을 말함
      -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발생한 가치가 최소 70%인 경우 자동차 부품의 총 구매가격
      -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발생한 가치가 70% 미만인 경우 자동차 부품의 총 구매가격에서 미국 및 캐나다산 가치를 근접한 5%로 반올림한 백분율이 차지하는 가격
  
  - 「미국 자동차 표시법」에 따른 라벨을 고의로 부착하지 않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각

---

109) 15 U.S.C. 제70b조

110) 15 U.S.C. 제70a조

111) 15 U.S.C. 제68h조, 제70i조

위반에 대하여 1천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함<sup>112)</sup>

- 위반은 라벨을 부착 또는 유지하지 않은 각 차량을 개별로 보아 처벌함

## 나. EU

□ EU는 「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에서 원산지규정을 비특혜원산지와 특혜원산지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원산지규정의 세부사항은 「관세법 위임법(UCC Delegated Act), UCC DA」에서 정함

□ 특히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일반관세, 물품의 무역과 관련한 관세조치 이외의 조치, 기타 원산지와 관련한 연합의 조치에 적용됨<sup>113)</sup>

- 일반관세란 특혜관세조치를 제외한 관세를 말하며, 비관세조치 등에는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무역금지, 보호조치,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등이 포함됨<sup>114)</sup>

□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조치 등 중 국내생산물품과 관련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EU는 공통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시행됨<sup>115)</sup>

□ 다만 EU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정보에 대한 규정에서 원산지 또는 출처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게 정확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함<sup>116)</sup>

- 식품정보란 식품에 관련하여 라벨, 기타 부착재료, 기타 현대 기술도구, 구두 의사소통을 포함한 수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함<sup>117)</sup>

112) 49 U.S.C 제32309조

113) UCC Delegated Act 제59조

114) Taxation and Customs Union, "Guidance 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22. 3., p. 5.

115)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교역국의 일반 원산지 제도 조사』, 2019. 9., p. 125.

116)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7조

117)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조

- 식품사업자는 식품정보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식품사업자는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므로<sup>118)</sup> 국내생산된 식품 또한 원산지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짐
  - 또한 식품사업자란 식품의 생산·가공·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식품 관련 법령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함<sup>119)</sup>
- 식품의 원산지 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sup>120)</sup>
  - 특히 식품 또는 라벨에 첨부된 정보가 식품의 원산지 또는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의무임
  - 원산지 등을 표시하였으나 주원료의 원산지 등은 이와 다른 경우 주원료의 원산지 등도 제시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다르다고 표시해야 함
- 또한 EU 공통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에 따른 육류는 원산지 또는 출처의 표시를 해야 함<sup>121)</sup>
  - 이는 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 신선·냉장·냉동고기의 원산지 또는 출처의 표시와 관련된 시행규칙에서 정함<sup>122)</sup>
- 돼지고기 등의 육류를 포함한 식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결정은 UCC의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름<sup>123)</sup>
  - 관련 규칙에서는 구 「관세법」인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UCC가 이를 흡수하여 제정되었음

□ UCC는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국가 또는 영역이 관련된 경우<sup>124)</sup> 실질적이고, 경제

118)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8조

119) Regulation (EU) No. 178/2002 제3조

120)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

121)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

12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7/2013

123) Regulation (EU) No 1169/2011 전문 (3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7/2013 전문(3)

124) 하나의 국가 또는 영역에서 물품 전체가 생산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영역을 원산지로 보지만,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 적으로 정당화된 공정 또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국가 등을 원산지로 봄<sup>125)</sup>
- 이러한 공정 또는 작업을 위한 장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결과로 새로운 물품이 제조되거나 중요한 제조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 실질적 공정 또는 작업 여부는 마지막 생산국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실질적인 공정 또는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됨<sup>126)</sup>
    - UCC DA에서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 또는 작업을 부속서<sup>127)</sup>에 기본규정으로 명시하여 이를 충족하는 국가 또는 영역을 원산지로 봄<sup>128)</sup>
    - UCC DA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없고, 최종 실질적 공정 또는 작업을 사례별로 평가하여 결정함<sup>129)</sup>

[그림 III-1] EU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i>ANNEX 22-01</i>		
Introductory notes and list of substantial processing or working operations conferring non-preferential origin		
<i>SECTION 1</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 M3 HS 2017 Code ◀	Description of goods	Primary rules
0201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The origin of the goods of this heading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animal was fattened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slaughtering.
0202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	The origin of the goods of this heading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animal was fattened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slaughtering.
0203	Meat of swine, fresh, chilled or frozen.	The origin of the goods of this heading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animal was fattened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months before slaughtering.

자료: UCC DA ANNEX 22-01

- 125) UCC 제60조 제2항
- 126) Taxation and Customs Union(2022), p. 8.
- 127) UCC DA ANNEX 22-01
- 128) UCC DA 제32조
- 129) Taxation and Customs Union(2022), p. 16.

- 다른 국가 또는 영역에서 수행된 공정 또는 작업이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적용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sup>130)</sup>
  - 이는 마지막 공정작업의 모든 요소와 마지막 생산국에서의 공정작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검토해야 함<sup>131)</sup>
  
- 다만 운송, 보관, 포장 등을 위한 단순 공정 또는 작업은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당한 공정 또는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음<sup>132)</sup>
  - 단순 공정 또는 작업으로 보는 공정 등은 다음과 같음
    - 운송 및 보관 중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또는 선적이나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 먼지 제거, 체질, 선별, 분류, 매칭, 세척 및 절단으로 구성된 단순공정
    - 포장 변경, 수하물 해체 및 조립,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고정, 기타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물품의 세트나 앙상블 구성 또는 판매를 위한 구성
    - 마크, 라벨, 로고, 기타 유사한 구별 표시를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
    -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 분해 또는 용도의 변경
    - 위에서 명시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UCC DA의 부속서에 열거된 물품이 기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공정 또는 작업을 거친 경우 잔여규정이 적용됨<sup>133)</sup>
  - 잔여규정은 부속서에서 각 류별로 명시한 것으로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주요재료의 원산지를 물품의 원산지로 봄

---

130) UCC DA 제33조

131) Taxation and Customs Union(2022), p. 8.

132) UCC DA 제34조

133) UCC DA 제33조, ANNEX 22-01; Taxation and Customs Union(2022), p. 15.

- 다만 농축산물<sup>134)</sup>은 혼합재료의 경우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재료의 원산지를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며, 해당 재료가 없는 경우 혼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봄

[그림 III-2] EU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잔여규정 예시

<p><i>ANNEX 22-01</i></p> <p><b>Introductory notes and list of substantial processing or working operations conferring non-preferential origin</b></p> <p><i>SECTION 1</i></p> <p><b>LIVE ANIMALS; ANIMAL PRODUCTS</b></p> <p><b>CHAPTER 2</b></p> <p><b>Meat and edible meat offal</b></p> <p><b>Chapter residual rule applicable to mixtures:</b></p> <p>(1) For the purposes of this residual rule, 'mixing' means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operation consisting in bringing together two or more fungible materials.</p> <p>(2) The origin of a mixture of products of this Chapter shall b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materials that account for more than 50 % by weight of the mixture. The weight of materials of the same origin shall be taken together.</p> <p>(3) When none of the materials used meet the percentage required, the origin of the mixture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mixing was carried out.</p> <p><b>Chapter residual rule:</b></p> <p>Where the country of origin cannot be determined by application of the primary rules and the other Chapter residual rule[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major portion of the materials originated,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weight of the materials.</p>
--

자료: UCC DA ANNEX 22-01

- UCC DA의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공정 또는 작업을 거친 경우 주요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sup>135)</sup>
- 주요재료는 물품이 제1류 내지 제29류, 제31류 내지 제40류인 경우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물품이 제30류, 제41류 내지 제97류인 경우 재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

134) 제2류, 제4류, 제9류, 제14류, 제17류, 제22류

135) UCC DA 제33조; Taxation and Customs Union(2022), p. 16.

## 다. 일본

- 일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규정이 국내생산물품에도 적용되고 있음
  - 일본은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당한 표시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며, 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원산지의 부당한 표시에 대하여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sup>136)</sup>
  -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서는 안 됨
    -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일반소비자의 자주적·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
  
-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여부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에서 고시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반소비자가 판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됨<sup>137)</sup>
    - 외국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 등 이와 유사한 표시
    -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의 표시
    -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외국 문자로 나타나고 있는 표시
  
- 원산지란 물품의 성분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가 행해진 국가를 말함<sup>138)</sup>
  -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물품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음<sup>139)</sup>

136)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제5조

137) 일본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제1조

138) 일본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비고 제1조

139) 일본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제10조

- 물품에 라벨을 붙여 그 외 표시를 하는 것
  - 물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는 것
  - 물품을 단순히 포장 또는 조합하는 것
  - 간단한 부품을 조립하는 것
- <표 Ⅲ-1>에 열거된 물품은 표에서 명시한 행위를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봄

<표 Ⅲ-1> 일본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판정기준

품목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
식료품	녹차, 홍차	황차 제조
	청량음료 (과즙음료 포함)	원액 또는 농축 과즙을 희석하여 제조한 것: 희석
	쌀과	구이 또는 튀김
의류	직물	염색하지 않은 것, 제직 전에 염색하는 것: 제직 제직 후 염색하는 것: 염색
	자수 레이스	자수
	내의, 잠옷, 잠옷 외의 의류, 모자, 장갑	봉제
	양말	편직
신변용품	가죽구두	갑피와 바닥을 접착, 봉제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
잡화	시계	무브먼트 조립 뒷개 또는 밴드가 중요한 구성요소인 특수시계: 무브먼트 조립 및 뒷개 또는 밴드 제조 (무브먼트 조립과 뒷개 또는 밴드 제조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는 2개국임)

자료: 일본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원산지 정의에 관한 운용세칙」

- 또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시에 관한 협정 또는 규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함
-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의 자발적·합리적인 선택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 또는 규약을 체결할 수 있음<sup>140)</sup>

- 이에 따라 식품, 전기·가정용품, 화장품 등 61개의 품목군이<sup>141)</sup> 공정경쟁규약을 맺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42)</sup>
  
- 한편 일본은 「식품표시법」에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식품과 관련한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sup>143)</sup>
  - 일본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자주적·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식품표시기준」으로 정함
  - 「식품표시기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명칭, 알레르겐, 보존의 방법, 소비기한,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 원산지, 기타 사항
    - 표시방법,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 식품 관련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식품표시기준」은 수입품 이외의 가공식품에 대하여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함<sup>144)</sup>
  -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의 원산지를 원재료명과 함께 표시해야 함
    -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가 2 이상인 경우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함
  - 절임 농산물의 경우 원재료 및 첨가물 중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4개의 원산지를 순서대로 표시해야 함
  - 냉동 야채는 원재료 및 첨가물 중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3개의 원산지를 순서대로 표시해야 함

140)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제31조 제1항

141) 총 65개의 공정경쟁규약이 있으나 4개의 규약은 서비스업에 관한 것임

142) 일본 전국 공정거래협의회 연합회, [https://www.jfftc.org/rule\\_kiyaku/kiyaku\\_hyoji.html](https://www.jfftc.org/rule_kiyaku/kiyaku_hyoji.html), 검색일자: 2022. 8. 12.

143) 일본 「식품표시법」 제4조

144) 일본 「식품표시기준」 제3조 제2항

- 또한 식품 관련 사업자가 신선식품을 판매할 때 해당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sup>145)</sup>
  - 국내생산된 농축산물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을 표시할 수 있음
    - 축산물의 경우 국내에서의 사육기간이 외국에서의 사육기간보다 짧은 경우 국내에서 도축하더라도 국산이라고 표시 할 수 없음
  - 국내생산된 수산물은 수역명 또는 지역명이나 어획한 항구 또는 어획한 항구가 속하는 행정구역명을 표시할 수 있음
  - 같은 종류의 신선식품으로 여러 원산지의 것을 혼합한 경우 신선식품을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함
  
- 식품 관련 사업자 등은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sup>146)</sup>
  - 다음의 경우 총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식품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음<sup>147)</sup>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경우
    - 표시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총리는 지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시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지시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sup>148)</sup>
  
-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함
  -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원산지(원재료의 원산지를 포함함)에 대해 허위표시가 된 식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149)</sup>
  -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지시에 관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150)</sup>

---

145) 일본 「식품표시기준」 제18조 제1항

146) 일본 「식품표시법」 제5조

147) 일본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

148) 일본 「식품표시법」 제6조 제5항

149) 일본 「식품표시법」 제19조

150) 일본 「식품표시법」 제20조

## IV.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운용상 쟁점사항

### 1. 원산지규정의 구조

#### 가. 규정의 방식

- 「대외무역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즉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물품임
  
- 그러나 국내생산물품과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서 생산자가 파악하기가 어려움
  - 국내생산물품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검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산지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고 하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안전을 위한 승인, 검사 등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령이 아닌 안전기준이나 표준 등으로 고시함
  - 법·시행령·시행규칙의 법령에서는 제품의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규칙에서 원산지에 관해 명시함
  
- 예를 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도록 함

- 법에서는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시행령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고시하도록 위임함<sup>151)</sup>
-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며,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의 종류에 따라 안전기준을 고시하고, 각 안전기준의 부속서에 품목별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함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이와 같이 제조국의 표시는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국의 결정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함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제조국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제조국의 의미나 기준이 없음
  - 또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정의한 제조국의 의미 또한 제조국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음
    -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시는 명시하지 않음
- 반면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국내생산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산지결정에 관한 사항은 표시규정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기도 함

1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소방용품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됨<sup>152)</sup>
  - 이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용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대한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함
  
- 소방청의 기술기준에 따라 일부 소방용품의 경우 제품의 보기 쉬운 부위에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소방용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
    - 경종: 모터의 원산지<sup>153)</sup>
    - 소화기: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의 원산지<sup>154)</sup>
    - 역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sup>155)</sup>
    - 소화약제: 소화약제의 원산지<sup>156)</sup>
  
- 이와 같이 소방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은 소방청장이 고시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별도로 규정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위탁받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하여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을 정함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부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업무세칙은 부품의 생산에 참여한 국가의 수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수입원료를 사용한 경우 생산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됨
  
- 부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

1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153)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15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155)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156)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sup>157)</sup>

-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다만 부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다음의 단순한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sup>158)</sup>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

- 통풍
-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 냉동, 냉장
-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거르기 또는 선별
-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 시험 또는 측정
-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 각피, 탈각
- 펴기, 압착

□ 그러나 이와 같은 원산지판정기준은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과 별도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서 정하고 있어 물품의 생산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15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15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기술기준이나 표준을 확인하더라도 원산지결정을 위한 규정을 추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처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관련 당사자나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의 규정을 고려해야 함

#### 나. 규정의 우선순위

-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은 다른 법령이 「대외무역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는 원산지표시 또는 증명을 위해 물품과 관련된 법령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대외무역법」을 따름<sup>159)</sup>
- 그러나 「대외무역법」은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엄격히 해석하면 「대외무역법」보다 다른 법령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 이러한 규정과는 다르게 다른 법령과 「대외무역법」에서 동시에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다른 법령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화기의 밸브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

159) 「대외무역법」에서도 정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또는 증명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쟁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함

관한 업무세칙」에서 모두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소화기의 밸브는 제8414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반면 소화기의 밸브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그러나 각 규정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상이하여 소화기 밸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때에 어떤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은 6단위 세번변경과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51%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함
  - 반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은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함
-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밸브의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했을 때 적용되는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원산지가 달라짐
-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미만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으며, 가공국 등으로 표시해야 함
  - 그러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은 원재료의 6단위 세번만 변경되면 밸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표시의 판단과도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의 가능 여부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한 밸브를 「대외무역법」상 거짓표시로 볼 수 있을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어떤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행위를 행한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sup>160)</sup>
- 이러한 문제는 「대외무역법」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순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외무역법」과 다른 법령 간의 관계가 정리된다면 우선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표시하고, 그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수 있음

## 2.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 가. 적용대상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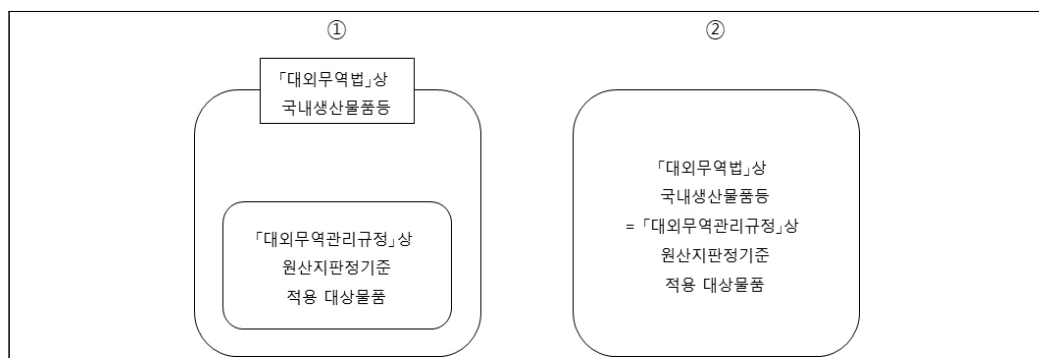
-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내생산물품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이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을 말함<sup>161)</sup>
- 이에 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은 ①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② 국내수입 후 단순가공활동만을 하지 않고, ③ 농수산물·식품, 의료용품, 화장품, 지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를 할 수 있음

---

160)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의2 제2호  
161)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 적용대상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한편 2022년 12월에 시행되는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음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금지 조항을 준용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거짓 또는 오인표시, 위반물품의 거래를 금지함<sup>162)</sup>
- 또한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등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sup>163)</sup>
- 이러한 규정의 적용 시 국내생산물품등이 단순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인지 국내생산물품 중 원산지판정기준의 적용대상물품인지 쟁점이 될 수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대상 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물품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그림 IV-1] 국내생산물품등과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



자료: 저자 작성

162)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5조 제3항  
 163)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6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한 물품만이 국내생산물품등이라 규정하지 않음
  -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표현함
  
- 따라서 「대외무역법」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물품이지 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국내생산물품등이라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금지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표시대상을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하고, 「대외무역규정」의 원산지표시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
  -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원산지표시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조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무역규정」의 별표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고시하고 있음
  - 반면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판정기준의 적용대상과 구분하거나 동일하다고 해석되는 규정은 없음
  
- 이러한 점을 볼 때 국내생산물품의 경우도 「대외무역법」상 국내생산물품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물품이 구분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은 수입물품과 같이 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른 유형이며,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물품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원산지규정의 대상임
  
- 그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 또한 적용대상을 원산지표시대상과 수입물품을 구분하고 있음
  - 제1호와 제2호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오인 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 또는 변경이라는 행위만 규정할 뿐이며, 그 대상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 반면 제3호와 제4호는 원산지표시대상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되는 물품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표시대상인 아닌 물품의 경우에도 원산지의 거짓 또는 허위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 또는 변경 행위를 금지한다고 봄<sup>164)</sup>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
    - 이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품등의 경우에도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 또는 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생산물품도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경우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표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음
  -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
- 다만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국내거래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을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국내생산물품등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국내거래 금지규정의 대상을 수입물품이 아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의 경우처럼 국내생산물품 또한 국내거래 금지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보면 국내생산물품등이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물품과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의 의미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물품과 동일하다면 국내거래 금지대상을 국내생산물품등이라고 규정하여도 그 대상이 한정된 것임

164) 법제처 08-0015, 2008. 4. 22., 산업자원부; 법제처 17-0539, 2017. 11. 8., 산업통상자원부

-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은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와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
  - 거짓 또는 오인표시 행위와 거짓 또는 오인표시를 한 물품의 국내거래 행위 모두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준용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이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것인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함
  - 수입물품의 해석 사례를 보아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입 물품의 규정과 비교하면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음
  
- 한편 「대외무역법」 제37조는 수출물품을 한정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생산물품 역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모든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대외무역법」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 등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과 원산지증명 규정은 모든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원산지표시와 증명은 판정이 선행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의 경우 원산지판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해야 함
  -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이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며, 원산지판정을 하지 못한 물품은 원산지표시와 증명을 할 수 없음
  
- 수출·입물품은 모든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증명 또한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가능함
  - 「대외무역법」은 수출 또는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sup>165)</sup>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명시함<sup>166)</sup>

- 수출물품은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따르지만 수입물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을 특정하지 않고 수출 또는 수입물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을 특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대상으로 국내에서 단순가공을 하지 않고 특정 류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만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이 가능함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식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sup>167)</sup>

□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정확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원산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음

□ 즉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 국내생산물품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반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국내 생산물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고 볼 수 있음

165) 「대외무역법」 제34조 제1항

16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16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4항 내지 제5항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대외무역법」의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함
  - 국내생산물품등을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보아야 원산지표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원산지증명서 또한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만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외무역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모든 국내생산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sup>168)</sup>
  
- 이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이 국내생산물품등에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함

#### 나.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상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의 원산지규정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됨
  - 국내생산물품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은 개별법령에 따름
  - 원산지판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증명하므로 개별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표시·증명 또한 개별법령을 따라야 함

---

168) 정재환(2022), p. 2.

- 이는 반대로 「대외무역법」과 개별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물품은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원산지판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원산지표시와 증명을 할 수 없고, 거짓 또는 오인 표시·증명 같은 위반사항 또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 1)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의 적용

- 「대외무역법」상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은 개별법령에서 원산지표시는 규정하지만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기도 하며, 원산지표시 규정 자체가 없기도 함
  - 원산지표시만을 규정하는 경우 원산지를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원산지가 정확한지 판단을 할 수 없음
  - 원산지표시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표시방법의 적정성이나 표시의 정확성을 알 수 없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생활용품에 제조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국의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의미가 불분명함
  - 제조국은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개별법령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 간의 관계가 정립된다면 제조국표시가 원산지표시로 대체될 수 있음
    - 품목에 따라 제조국을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도록 하기도 함<sup>169)</sup>
- 예를 들어 가죽제의 마구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이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국을 표시해야 함
  - 제4201호에 분류되는 가죽제의 마구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지만 안전기준 준수 대상인 가죽제품에 해당함

169) 가죽제품은 수입물품의 경우 제조국을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

- 그러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품목별 안전기준에서는 제조국의 정의나 판정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sup>170)</sup>
  -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제조국표시가 생략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를 제조국으로 보는지는 규정하지 않음
  -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만 행하거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름
  
- 이에 따라 국내생산된 가죽제 마구는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국을 표시한 경우 그 표시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원산지를 ①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와 ② 수입국으로 표시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국내생산된 가죽제의 마구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우리나라가 원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우리나라에서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은 이미 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물품 규정이 아닌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이 없으므로 원산지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음
  
- 반대로 국내생산된 가죽제 마구의 제조국을 원료를 수입한 국가로 표시한 경우 해당 표시가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외무역법」의 수입물품 규정에 따르면 수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단순공정이 아닌 가공으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었다면 수입국이 원산지가 아님
  -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면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해당 표시는 거짓 표시에 해당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가공이 행해진 경우 수입물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산지가 수입국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음

170)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 별표 1.

- 즉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활동이 행해진 가죽제 마구에 제조국을 표시한 경우 표시된 제조국과 관계없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우리나라를 제조국으로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도 국내생산물품은 그 정확성을 확인할 판정근거가 없음
  
- 한편 국내생산된 의료기기나 화장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법령에서도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의료기기법」이나 「화장품법」은 수입물품의 경우 제조국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려고 규정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표시규정은 명시하지 않음
  
- 따라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또한 국내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원산지표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자체는 가능함
  - 그러나 국내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적절한 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도 그 진위를 판단할 기준이 없음
  
- 이처럼 「대외무역법」과 개별법령에서 원산지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에 관한 표시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를 할 수 없음<sup>171)</sup>
  - 부당한 표시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고시함<sup>172)</sup>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표시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로 봄<sup>173)</sup>

17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17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국내생산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라고 명시함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함으로써 그 표시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식별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하는 행위
  -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하는 행위
  -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하고 제조업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이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내생산물품의 부당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금지하면서 원산지판정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수입물품의 경우 완전생산 또는 실질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기타 기준은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가공을 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으로 보며,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됨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가공을 하였다면 「대외무역법」의 수입물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sup>174)</sup>

17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I-10

17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열거한 원산지의 부당한 표시 행위에는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없음에도 우리나라로 거짓 또는 오인 표시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해당 경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따라도 부당한 표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이 불가한 것은 동일하며,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는 벗어나므로 논외로 함

- 따라서 어떤 국가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판정기준이 없으며, 원산지를 부당하게 표시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됨
- 이와 같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의 판정기준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음
  - 원산지표시를 위해서는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시킴
  - 「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에만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함
  - 개별법령에서 거짓·부당한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sup>175)</sup> 또한 각 법령에 따른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수 없음<sup>176)</sup>
  - 개별법령에서 부당한 표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역시 원산지의 부당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처벌 여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개별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부당한 원산지표시를 방지할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당한 원산지표시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원산지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국내생산물품에 적용할 일반적인 원산지판정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75)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개별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은 가능함

176) 「화장품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화장품법」 제13조, 제37조), 「의료기기법」은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기기법」 제24조, 제52조)

## 2) 원산지증명 규정의 적용

-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원산지증명 또한 원산지표시와 같이 원산지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판정결과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음
  
- 「대외무역법」이 아닌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지만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 법령은 없음
  - 따라서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의 충족 여부와도 관련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원산지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조합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sup>177)</sup>
  - 우리나라에서 6단위 세번이 변경된 경우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17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 또는 우리나라에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조원가의 85% 이상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야 함
- 세번변경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닌 원재료의 세번변경이 필요하며,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원재료는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도 됨
  - 이 경우 국내생산물품과 세번이 동일한 원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 그러나 국내생산물품과 6단위 세번이 동일한 원재료에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음
  - 원산지판정기준이 없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명 또한 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내생산물품은 「대외무역법」상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국내생산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증명서 발급규정의 실익이 없게 됨
- 또한 부가가치기준은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므로 원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입원료의 가격이 적을수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원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원재료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해당 원재료의 가격은 제조원가에서 공제됨
  -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명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없음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조원가에서 재료비의 비중이 큰 물품의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원산지증명서로 증빙할 수 없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판정기준은 주로 소비재에 적용되므로 국내생산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이어야 하는바 원산지표시대상은 주로 소비재를 위주로 지정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표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판정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3.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됨
  - 따라서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상이함
- 수입·수출·국내생산물품의 구분은 거래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지만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으로 보아야 함

- 또는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판매되는 물품은 국내생산물품이며,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원료가 수입되고, 최종 생산물품이 수출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이 중요함
  -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은 「대외무역법」상 동일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sup>178)</sup> 국내생산물품은 별도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므로 구분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수출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내생산물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
  -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함<sup>179)</sup>
  -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뜻함<sup>180)</sup>
  - 국내생산물품등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을 말함<sup>181)</sup>
- 이를 살펴보았을 때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물품은 원료로 최종 생산물품에 결합·포함되어 국내생산물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입물품은 원료가 아니라 최종 생산물품 자체로 보아야 함

178)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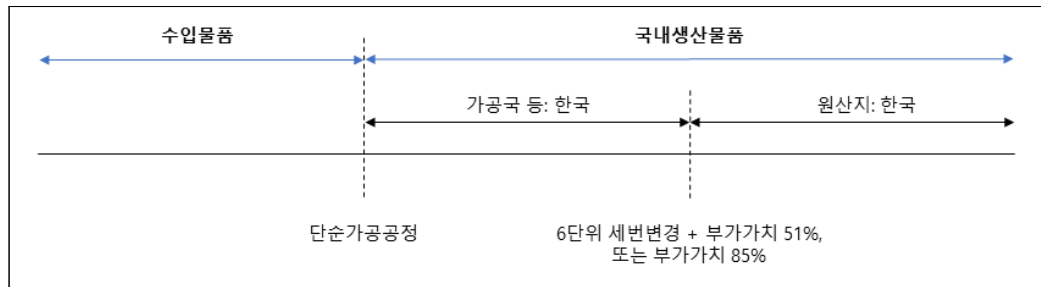
179)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18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181)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 이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국내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을 국내 생산물품에서 제외하면서 국내생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
  - 국내에서 단순공정만을 수행한 경우 국내생산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물품은 수입물품 상태로 보아야 함
  
- 다만 단순가공을 초과하는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생산은 되었지만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의미는 아님을 주의해야 함
  - 즉 국내생산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보는 것이 아니며,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결정되었을 뿐임
  -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충족한 경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음

[그림 IV-2] 국내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의 구분



자료: 저자 작성

- 그러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단순가공이 아닌 공정을 거친 국내생산물품을 수입물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이 없어 국내생산물품등을 국산으로 표시해도 처벌할 수 없음
  - 그러나 국내생산물품등을 수입물품으로 보아 6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것임

-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태양광셀을 사용하여 국내생산된 태양광모듈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sup>182)</sup>
  - 태양광셀 대부분이 중국산인 상황에서 국산으로 표기하고 국내유통되는 태양광모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관세청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 태양광모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은 태양광모듈의 원산지를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였기 때문임
  - 태양광셀과 태양광모듈은 제8541.40호에 분류되므로<sup>183)</sup>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함<sup>184)</sup>
- 그러나 태양광모듈은 태양광셀을 사용하여 국내생산된 물품이므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sup>185)</sup>
  - 이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85% 이상이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sup>186)</sup>
  - 다만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sup>187)</sup>
- 이러한 점을 검토하였을 때 태양광모듈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sup>188)</sup>

182) 이정우, 「태양광셀 59%가 중국산인데, 태양광발전 국산 점유율이 78%」, 『문화일보』, 2020. 2. 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1401072230319001>, 검색일자: 2022. 8. 22.

18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시행 2019. 10.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7호, 2019. 9. 19., 일 부개정)

18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2021. 12. 9., 일 부개정)에서는 태양광셀은 제8541.42호에, 태양광모듈은 제8541.43호에 분류되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185) 태양광셀의 조립공정이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조립공정을 단순조립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의 문제로 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논외로 함

18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4항

18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5항

-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원산지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국: 한국, 셀: 중국’으로 표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에서 태양광모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태양광모듈을 수입물품으로 보았기 때문임
  - 개정 전의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 규정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조사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함<sup>189)</sup>
- 그러나 태양광모듈은 국내생산물품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이를 관세청이 단속할 근거 또한 없음<sup>190)</sup>
  - 따라서 태양광모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원산지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임
- 이와 같이 국내에서 단순가공을 초과하는 공정을 수행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구분하여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야 함
  - 우리나라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수입물품보다 엄격하며, 원산지표시 의무 여부,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대상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함
- 한편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 후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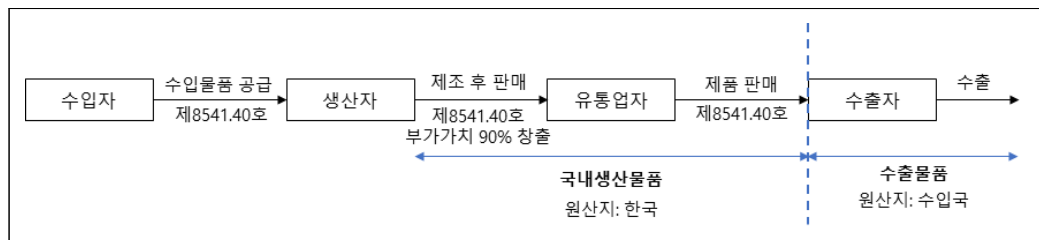
188)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모듈 점유율 통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중임」, 보도설명자료, 2020. 10. 15.

189)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3호

190) 이러한 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그러나 하나의 물품이 유통, 판매, 수출을 모두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단계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을 해야 함
  -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후 판매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수출자가 최종 수출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유통, 수출이 발생함
- 따라서 수입원료와 국내생산물품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하지만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와 수출되는 때의 원산지가 달라짐
  - 우리나라에서 생산 후 판매·유통되는 때에는 수입원료의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85%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원산지가 우리나라임
  - 그러나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종적으로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 가공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그림 IV-3] 국내생산물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 적용 예시



자료: 저자 작성

- 반대로 국내의 가공공정으로 수입원료와 6단위 세번이 다른 물품을 생산하였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한 국내유통 시와 수출 시의 원산지가 다름
  - 우리나라에서 생산 후 판매·유통되는 때에는 수입원료의 6단위 세번이 변경되어도 51%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됨
- 더욱이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규정이 확대되면서 하나의

물품에 여러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

-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표시만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금지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짐
  
- 원산지표시의 경우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생산단계에서 표시하였다면, 원산지는 어떤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표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함
  - 원산지표시를 하는 때에는 국내유통되는 국내생산물품이므로 조합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즉 수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유통 시에도 원산지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판정·표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이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세번변경은 되었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인지 검토해야 함
  
- 「대외무역법」의 규정만 검토한다면 수출 전 국내유통단계에 있는 물품은 국내생산물품이므로 해당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대외무역법」에는 물품이 어디서 최종 소비·사용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물품을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봄
  -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거래 당시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그러나 소비자보호라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최종 수출되는 물품은 거래단계와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생산된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후 수출된다면 소비·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오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 이와 같이 국내판매·유통, 수출의 거래가 모두 발생하는 국내생산물품은 정확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함
  - 특히 「대외무역법」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러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커짐
  
- 한편 국내유통 후 수출되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 또한 이전의 거래단계의 원산지증명서가 어떤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 국내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류를 바탕으로 발급되어야 함
  - 따라서 국내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 어떤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 등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류를 근거로 발급됨
  
- FTA 협정 등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출자가 국내생산물품을 국내판매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급받으면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판정기준이 문제될 수 있음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국내생산물품을 판매하는 단계에는 수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물품이 최종 수출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근거로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음

- FTA 협정에서는 수출국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모든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를 발급받음
  - 공급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모든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국내생산물품도 생산자가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비용과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발급 신청하여 그 내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반면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으므로 심사에 대한 업무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음
  
- 따라서 국내유통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와 연관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발급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외무역법」상 국내생산물품등의 의미를 수입물품, 수출물품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국내생산물품의 정확하고 성실한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V.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립

#### 가. 적용법령의 우선순위 설정

-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함<sup>191)</sup>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원산지판정기준을 공고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특정품목을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과 달리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는 다른 법령에서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소화기의 밸브의 원산지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다른 법령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이 중복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함
  -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부당한 표시와 관련하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기준 적용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191)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 「대외무역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고만 명시할 뿐 적용의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가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령과 「대외무역법」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순위를 규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은 관련 물품·산업의 구조, 특성,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무역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보다는 물품과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제35조의 단서조항을 다른 법령의 원산지판정기준과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기준을 따른다’와 같이 개정할 수 있음
  -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처럼 개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다른 법령의 적용 우선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대외무역법」의 일반규정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원산지판정기준을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물품의 정확한 원산지표시와 위반행위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명백해짐

-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표시한 국내생산물품은 해당 법령 또는 「표기·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음

####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공고

- 「대외무역법」은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물품을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다른 법령을 고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서 특정물품을 제외하여 해당 물품과 관련된 법령에서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추측만 가능함
- 이에 따라 판매자는 적절한 원산지표시를 위해 물품과 관련된 개별법령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소비자 또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움
  - 판매자가 원산지표시를 위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 또한 원산지가 어떤 규정을 근거로 결정되었고 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 특히 개별법령은 원산지표시를 안전관리와 같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그 내용을 하위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생활용품의 제조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규칙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별로 고시된 안전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함
- 이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산지규정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생산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함
  - 「대외무역법」과는 달리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함

- 따라서 물품의 판매자 등이 관련된 원산지규정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에서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규정이므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재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공고하는 것은 업무와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수출입요건을 고시하는 통합공고와 유사한 형태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고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령 원산지판정기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제35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판정기준도 함께 공고하도록 할 수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출받은 원산지판정기준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
-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제조국표시와 같이 원산지표시와 유사한 규정도 해당 공고에 고시하여 원산지표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동일한 물품이 개별법령의 제조국표시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판매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움
    - 다른 법령과 「대외무역법」의 관계가 정립된다하더라도 원산지와 유사한 개념인 제조국과 관련된 규정에도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그러나 「대외무역법」에서 이러한 유사한 개념 또한 원산지표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공고한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생산물품의 판매자등이 원산지규정을 쉽게 파악·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규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또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2. 국내생산물품등의 범위 조정

### 가.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면서 특정물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과 농수산물·식품, 의료용품, 화장품, 지류, 섬유, 유리, 철강, 차량, 선박은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원산지판정기준의 적용 제외대상은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으며,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음
  - 원산지의 거짓 또는 오인표시 행위나 거짓 또는 오인표시를 한 물품의 거래행위가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을 의미하기 때문임
- 또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 한정됨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뿐 아니라 적용 대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은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이 불가하여 이를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적용대상이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리나라가 원산지임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표시·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의 품목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 제정 당시와 달리 변화된 소비자의 인식 등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원산지표시와 증명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대외무역법」은 조합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든 적용대상 물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판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특정물품이나 관련 산업의 특성,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적용대상만 확대한다면 관련 업계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 WTO가 통일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된 점은 원산지판정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보여줌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2007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됨
- 실례로 2011년 수입 판유리의 원산지표시 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함
  - 수입 판유리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sup>192)</sup>에서 공고하고 있음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sup>193)</sup>는 국내에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 후 판매 시 수입물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의 가공을 단순가공으로 보아 해당 공정을 수행한 경우 국내생산물품이 아닌 수입물품으로 인정한 것임

192) 현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됨

19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72호, 2010. 6. 10., 일부개정)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10년 10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 후 국내에서 재단한 판유리만 수입물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sup>194)</sup>
  - 이에 따라 국내에서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를 한 판유리는 국내생산물품으로 인정되어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됨
  
-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국내에서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한 판유리는 수입물품이라고 유권해석하고 고시를 재개정하려고 하자 업계의 반발이 발생함
  - 국내에서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한 판유리의 원산지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2011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재개정하려고 추진함<sup>195)</sup>
  - 지식경제부가 판유리 수입업체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특정업체의 주장만을 고려해 수입 판유리에 원산지표시 의무를 다시 부과한다고 봄<sup>196)</sup>
  
- 국내생산물품은 원산지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유사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순히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의 품목이 확대된다면 관련 물품·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의 반영을 요구하는 업체의 반발이 발생하게 됨
  
- 또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 확대는 개별법령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못하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문제를 개선하지 못함
  - 원산지판정기준이 없는 물품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령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이 불가능함
  - 그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여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

19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0. 10. 6.)(관세청고시 제2010-119호, 2010. 9. 30., 일부개정)

195) 이에 따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판유리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명확화함(「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1. 7. 1.) (관세청 고시 제2011-24호, 201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196) 이유범, 「판유리 원산지 표기'갈등'해법은 없나」, 『파이낸셜뉴스』, 2012. 5. 16., <https://www.fnnews.com/news/201205161727214035>, 검색일자: 2022. 8. 23.

-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생산물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원산지 거짓 표시의 처벌문제를 고려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의 원산지판정 절차 마련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은 유지하고 제외되는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판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의 원산지판정 절차에는 판정에 사용되는 기본원칙이 포함되어야 함
- 미국은 국내생산물품의 객관적인 원산지판정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미국산 물품은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의 원산지가 미국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 EU 또한 품목별로 고시된 원산지판정기준이 없는 물품은 실질적이고 정당화된 공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라는 원칙하에 원산지를 판정함
  
- 원산지판정의 기본원칙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적이고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의 미국산물품에 대한 엄격한 판정기준은 2년여에 걸친 공청회와 소비자 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음<sup>197)</sup>
  
- 이와 같이 원산지판정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

---

197) 채형복(2011), p. 96.

- 미국의 경우 연방무역위원회가 미국산표시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관련 결정이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 제34조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생산물품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여서 요청자에게 알리고, 통보 받은 자는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sup>198)</sup>
- 다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인 국내생산물품뿐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국내생산물품은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가능해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의 개념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
  - 즉 「대외무역법」상 국내생산물품등을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후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되는 물품으로 규정해야 함
    - 「대외무역법」 제35조의 제2항을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물품(이하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그 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33조 제4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의 국내생산물품등은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으로 변경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제34조 대상에 국내생산물품등을 포함한다면 원산지판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판정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됨
  -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경우 원산지판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

198)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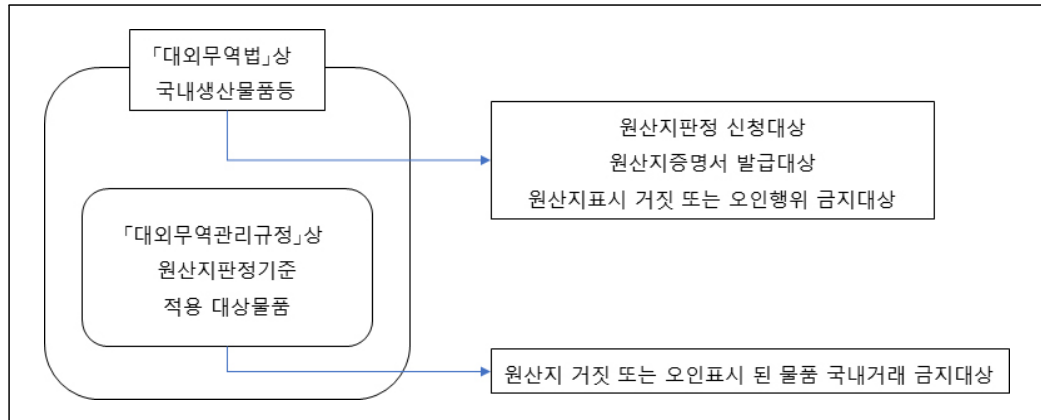
로 볼 수 있을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판단하여야 함

- 이러한 판단은 관련 물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판매자 등의 요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판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이와 같이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련 업계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수요와 입장을 판단할 수 있음
  - 물품 판매자 등과 관련 기관의 신청을 통해 원산지판정을 하므로 원산지판정·표시·증명이 필요한 물품과 그 이유, 위반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특성,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 이렇게 확대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물품의 특성 등을 반영하게 되므로 업계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이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없어 거짓표시를 판단할 수 없었던 문제 또한 개선될 수 있음
  - 모든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표시 금지규정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립이 선행된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표시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원산지판정절차를 통해 모든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임에도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될 수 없었던 물품의 경우도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판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그림 V-1] 국내생산물품등과 원산지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의 구분 개선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산지규정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모든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단속할 수 있음에 따라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또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다. 수출입 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구분 명확화

-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을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외무역법」의 규정에서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음
  -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판정기준이나 원산지표시 의무 등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단순가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현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수입 후 단순가공을 한 물품을 제외하고 있을 뿐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는 규정에 수입 후 단순가공을 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면 국내생산물품과의 구분이 용이해짐
  - 가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수입물품(수입 후 단순가공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판정은’으로 개정할 수 있음
  
- 다만 수입원료와 생산물품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한 경우 단순가공만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단순가공 이상이 행해졌다면 국내생산물품으로 보아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2019년 관세청에서 수출되는 태양광모듈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면서 6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를 단순한 조립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음<sup>199)</sup>
  - 이는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아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며 해당 물품이 수입물품이라는 의미는 아님

199) 관세청, 「원산지 국산으로 둔갑시킨 4천억대 태양광 모듈 수출 적발」, 보도자료, 2019. 9. 24.

- 반면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거래단계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대외무역법」은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물품으로 국내생산물품등을 규정하여 국내 판매·유통 후 수출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이 어려움
  
- 국내생산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경우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 규정이 국내에서 기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수출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 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할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출될 것이 예정된 물품의 경우 국내생산물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외무역법」 제35조의 국내생산물품등에 수출될 예정인 물품을 제외한다는 설명을 삽입할 수 있음
  - 또는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와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과 제61조 제3항의 수출물품에 수출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물품을 포함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의 마련을 통해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음
  -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하게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음

### 3. 원산지증명 규정의 정비

#### 가. 원산지확인서 발급규정 신설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과는 달리 부가가치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부가가치기준은 국내생산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가격을 공제한 가격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됨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충족은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는 원재료가 많을수록 용이해짐
  -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수입원료의 가격은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원재료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원재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류가 필요하며,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함
  - 원산지증명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sup>200)</sup>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원재료 공급자는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공신력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또한 국내생산물품을 공급받는 구매자가 수출용과 국내판매용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됨

200) 「대외무역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7조 제1항

-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이 다르므로 원산지증명서가 각각 발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심사와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늘어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공급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201)</sup>
-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허용한다면 원재료 공급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충족 또한 용이해짐
  - 우리나라가 원산지임이 원산지확인서로 증빙된 원재료는 국내생산물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포함되게 됨
- 또한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하나의 원산지확인서로 각각 증명할 수 있음
  - 원산지확인서는 동일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 또한 원산지서류의 보관·관리가 쉬워짐
- 그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는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확인이 가능하므로 업무 및 비용의 부담이 절감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는 반복되는 거래일지라도 물품을 공급하는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sup>202)</sup>
- 다만 원산지확인서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원산지증명을 용이하게 하지만 물품의 원산지확인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1)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37조

202) 이와 관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기준으로 한 경우임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심사를 통해 원산지판정근거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지만 원산지확인서는 판매자가 직접 발급함
- 따라서 원산지확인서로 증명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또한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발급되고, 그에 따른 원산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원산지확인서의 장점 또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나. 원산지증명서류 허위발급 금지규정의 대상 추가

-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규정과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신설하였음
- 기존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위반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었으며,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규정은 없었음
-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도 수출물품의 발급규정만 명시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위반행위는 금지규정이 신설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함
- 반면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203)</sup>
- 즉 수출물품과 달리 국내생산물품은 원산지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발급받아도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함
- 수출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발급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

---

203) 「대외무역법」 제38조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204)</sup>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위반행위의 금지규정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국내 판매하는 경우의 양형이 달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수출 및 외국판매의 경우와 국내 판매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원산지를 가장하는 행위에 원산지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내용으로 발급하는 경우 또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수출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를 가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함
  
- 원산지확인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그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발급관련 위반 금지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필요함
  - 원산지확인서는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보다 위조, 변조, 거짓발급이 쉬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204)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 VI. 결론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은 국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표시·증명할 수 있는 물품을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는 국내의 제조·가공활동을 보호하는 역할로 이어짐
  
- 이러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의 올바른 이행을 담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증명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은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원산지판정기준이 제한된 물품에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나 증명이 필요한 물품과 관련하여 요건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또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하고, 원산지증명은 발급 자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은 원산지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인 원산지판정기준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에서는 개별법령에서 판정기준을 정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주로 소비재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개별법령에서도 원산지표시 규정은 정하고 있으나 원산지판정기준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원산지판정기준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은 원산지표시나 원산지증명과 같은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됨
  - 개별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표시 유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가 정확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함
  -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음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의 개선방안은 ①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마련, ② 규정의 접근성 개선, ③ 기타 규정정비로 요약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인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물품에 적용할 보편적인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판정절차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관련자가 규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근거서류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생산물품의 허위 원산지증명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함
-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외무역법」상 해당 원산지규정의 개정에 대한 하위 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참고문헌

- 강준하, 「WTO 통일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pp. 33~58.
- 관세청, 「원산지 국산으로 둔갑시킨 4천억대 태양광 모듈 수출 적발」, 보도자료, 2019. 9. 24.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 II』, 2010.
- 산업자원부, 「국산물품 원산지표시(“Made in Korea”)제도 도입 검토」, 보도자료, 1998. 5. 20.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교역국의 일반 원산지 제도 조사』, 2019.
- \_\_\_\_\_,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모듈 점유율 통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증임」, 보도설명자료, 2020. 10. 15.
- 유선봉, 「원산지규정의 주요 이슈와 전망: 원산지 판정기준과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6, pp. 267~290.
- 이유범, 「‘판유리 원산지 표기’갈등 해법은 없나」, 『파이낸셜뉴스』, 2012. 5. 16.
- 이정우, 「태양광셀 59%가 중국산인데, 태양광발전 국산 점유율이 78%」, 『문화일보』, 2020. 2. 14.
- 정재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안 검토」, 2022년 상반기 관세연구 전문가 간담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7. 27.
- 정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정민철, 『원산지 누적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KIEP 연구보고서 17-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채형복,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관세학회지』, 제6권

제2호, 2005, pp. 73~89.

\_\_\_\_\_,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2011.

최홍석·이영달, 『FTA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

Federal Trade Commission,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Federal Register, 62(231), 1997.

\_\_\_\_\_, “Complying with the Made in USA Standard,” 1998.

Taxation and Customs Union, “Guidance 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22.

법제처 08-0015, 2008. 4. 22., 산업자원부

법제처 17-0539, 2017. 11. 8.,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050>, 검색일자: 2022. 7. 4.

\_\_\_\_\_,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3090>, 검색일자: 2022. 7. 5.

\_\_\_\_\_,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4113>, 검색일자: 2022. 8. 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4&pageFlag=&sitePage=1-2-1>, 검색일자: 2022. 7. 26.

일본 전국 공정거래협의회 연합회, [https://www.jfftc.org/rule\\_kiyaku/kiyaku\\_hyoji.html](https://www.jfftc.org/rule_kiyaku/kiyaku_hyoji.html), 검색일자: 2022. 8. 12.

관세연구 22-0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개선방안**

---

발 행 2022년 10월 31일

저 자 정재호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161-1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